

제 호

방사성동위원소사용(이동사용)신고확인증

1. 상호 :
2. 주소 :
3. 대표자 : 생년월일 :
4. 방사성동위원소의 종류 및 수량 :
5. 사용목적 :
6. 사용장소 :
7. 신고일자 :

위와 같이 「원자력안전법」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(이동사용)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

직인

(뒤쪽)

[illegible]